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재일 2014-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사건관계인의 정의에 법인 등을 추가하고, 비실명 처리 범위에 법인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의 명칭을 추가하여 판결서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
-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비실명 처리 범위에서 제외하여 판결서 등의 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소에 대한 비실명 처리 방식에서 동, 호수를 비실명 처리 범위에 포함시켜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건관계인의 정의에 자연인 외에 법인이나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를 추가함(제2조)
- 비실명 처리의 범위에 법인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의 명칭을 추가하고,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 등 포함)를 제외함(제4조 제1항)
- 비실명 처리의 범위에 개인이 아닌 사건관계인(법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함(제4조 제2항)
- 비실명 처리 범위에 개인이 아닌 사건관계인(법인 등)을 특정할 수 있

는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비실명 처리 방식에 관한 규정에서 비실명 처리 대상에 대한 표기를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서 “비실명 처리 대상인 정보”로 변경함(제5조 제1항)

- 판결서 등의 당사자란의 비실명 처리의 방식에서 법인 등의 명칭을 비실명 처리 대상에 추가함(제5조 제2항)
- 주소에 대한 비실명 처리의 방식에서 동, 호수를 비실명 처리 대상에 추가함(제7조)
- 별지에 대한 비실명 처리에서 개인이 아닌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비실명 처리 대상에 추가함(제9조)
- 적용 대상 : 이 예규 시행 후 확정된 판결서에 대한 비실명 처리에서부터 적용
- 시행일 : 2019. 1. 14.

3.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재일 2014-2) 일부개정예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예규에서 “사건관계인”이란 당사자, 변호인, 제3자 소송담당자, 법정 대리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참가인, 지배인, 피해자, 배상신청인, 선정자, 증인, 감정인, 소외인이나 공소외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의 지위 여부를 불분하고 판결서 등에 나타난 자연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서 등에 나타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성명, 명칭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한다.

1.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 등을 포함한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판결서 등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비실명 처리한다.

1.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3.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에 준하는 것

제5조제1항,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비실명 처리 대상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E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AA, AB, AC, AD, AE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겹쳐 사용할 수 있다.
- ② 판결서 등의 당사자란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대표자 주소 부분은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소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1. 시·군·구 다음부터 지번 부분까지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2. 주소에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빌딩’ 등이 포함된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빌딩’ 표시 앞 고유

한 이름 부분까지 알파벳 대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하고, 고유한 이름으로만 이루어진 건물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변환한 뒤에 ‘건물’이라는 명칭을 부기하여 표기한다.

3. 주소에 동, 호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동, 호수 부분을 하나의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시>

- *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 * 서울 강서구 (강서대로 1145 화곡)빌딩 407호 ⇒ 서울 강서구 M빌딩 N호
 -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판결서 등의 별지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정보도 판결서 등의 본문과 동일하게 비실명 처리한다. 다만 판결서 등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별지 자체를 삭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서에 대한 비실명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 예규에 의한다.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비실명 처리한다.

1.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3.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및 그에 준하는 것

제5조(비실명 처리의 방식)

①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E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AA, AB, AC, AD, AE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겹쳐 사용할 수 있다.

② 판결서 당사자란의 경우, 사건

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비실명 처리한다.

1.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3.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에 준하는 것

제5조(비실명 처리의 방식)

① 비실명 처리 대상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E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AA, AB, AC, AD, AE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겹쳐 사용할 수 있다.

② 판결서 등의 당사자란에 기재

관계인의 성명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명칭을 제외한 대표자 성명, 법인 주소, 대표자 주소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③ (생략)

제7조(주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 처리 방식)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소의 경우, 시·군·구 다음부터 지번 부분까지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주소에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빌딩’ 등이 포함된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빌딩’ 표시 앞 고유한 이름 부분까지 알파벳 대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하고, 고유한 이름으로만 이루어진 건물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변환한 뒤에 ‘건물’이라는 명칭을 부기하여 표기한다.

된 사건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대표자 주소 부분은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이 하 삭제)

③ (현행과 동일)

제7조(주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 처리 방식)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한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1. 시·군·구 다음부터 지번 부분까지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2. 주소에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빌딩’ 등이 포함된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빌딩’ 표시 앞 고유한 이름 부분까지 알파벳 대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하고, 고유한 이름으로만 이루어진 건물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변환한 뒤에 ‘건물’이라는 명칭을 부기하여 표기한다.

<예시>

*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m² ⇒ 용인시 F 임야 1,305m²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5동 201호

* 서울 강서구 (강서대로 1145 화곡)빌딩 407호 ⇒ 서울 강서구 M빌딩 407호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2동 1701호
제9조(별지에 대한 비실명 처리)

판결서 등의 별지에 기재된 개인 정보도 판결서 등의 본문과 동일하게 비실명 처리한다. 다만 판결서 등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별지 자체를 삭제할 수 있다.

3. 주소에 동, 호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동, 호수 부분을 하나의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시>

*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m² ⇒ 용인시 F 임야 1,305m²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 서울 강서구 (강서대로 1145 화곡)빌딩 407호 ⇒ 서울 강서구 M빌딩 N호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제9조(별지에 대한 비실명 처리)

판결서 등의 별지에 기재된 사건 관계인의 정보도 판결서 등의 본문과 동일하게 비실명 처리한다. 다만 판결서 등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별지 자체를 삭제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연락처	(02) 3480 - 1612